특 허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2허4659 권리범위확인(디)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윤형근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용

변 론 종 결 2023. 4. 20.

판 결 선 고 2023. 6. 15.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22. 7. 26. 2022당19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

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 1) 물품의 명칭: 옹벽블록
-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3. 4. 12./ 2014. 7. 9./ 제30-0752340호
- 3) 디자인권자: 원고
- 4)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
- 나. 확인대상디자인
 - 1) 물품의 명칭: 옹벽블록
 - 2) 도면: [별지 2]와 같다.
- 다. 선행디자인들
 - 1) 선행디자인 1(을 제1호증)

우림산업이 2009년경 발행한 'WOORIM INDUSTRY'(을 제1호증)라는 제목의 카탈로그에 게재된 '문양거푸집(크랭크유로폼)(제품번호: WR 1201A)'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3의 가]와 같다.

2) 선행디자인 2(을 제2호증)

우림산업이 2011년경 발행한 'WOORIM INDUSTRY'(을 제2호증)라는 제목의 카탈로그에 게재된 '문양거푸집(크랭크유로폼)(제품번호: WR 1201A)'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3의 나]와 같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1) 원고는 2022. 1. 20.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22당195호로 '피고가 실시하는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 2) 특허심판원은 2022. 7. 26.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공통점은 옹벽블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상이거나 기능적 형태인 반면, 차이점은 전체 디자인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디자인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부분이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를 대비·관찰할 경우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지 않아 서로 다른 심미감을 가지므로, 양 디자인이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워고의 주장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정면의 자연석 모양', '측면의 돌기부 및 오목부 형상', '상·하부면의 오목부 형상'이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독창적인 심미감을 형성하는데, 이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이러한 특징이 공통된다.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하이점은 옹벽블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옹벽블록의 기능적 형태이며, 전체 디자인의 세부적인 부분에 불과하다. 따라서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인 정면부는 이미 공지된 부분이어서 권리를 인정할 수 없고, 양 측면에 형성된 돌기부 및 오목부, 상·하부면에 형성된 배수로는 공지된 부분일 뿐만 아니라 기능적 형태이다. 한편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평면부, 좌·우측면부의 형상 및 모양에 차이가 있고, 상·하부면에 형성된 배수로의 형상 및 모양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그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관찰하여 일반 수 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공지 부분에서는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특징적인 부분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2939 판결 등 참조). 또한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3794 판결 등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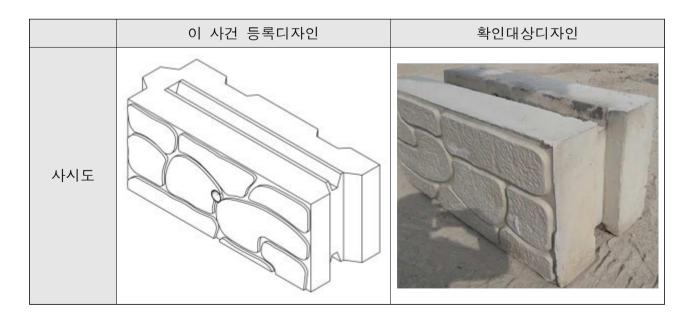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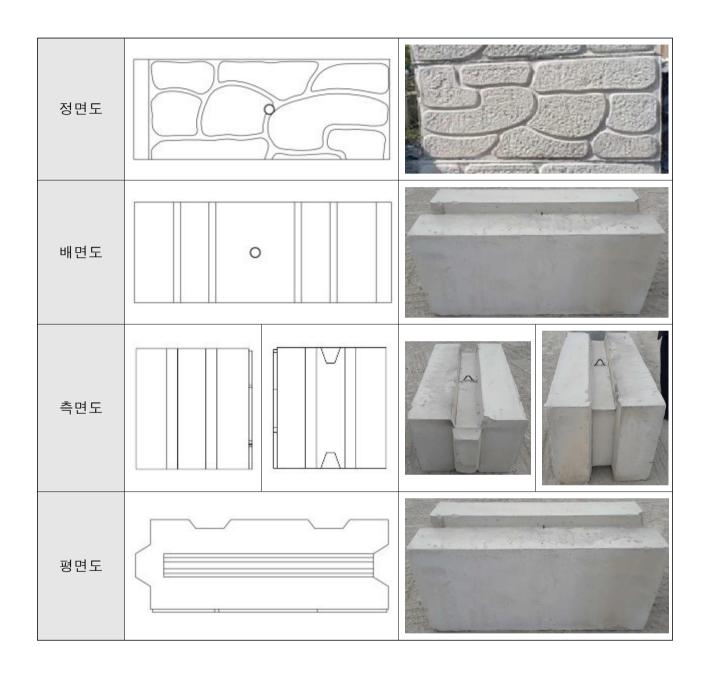
1) 대상 물품의 동일 · 유사 여부

땅을 깎거나 흙을 쌓는 등의 이유로 비탈이 생긴 경우 흙의 압력으로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옹벽을 설치하는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이러한 벽면을 쌓아 올리는 데 쓰기 위한 '옹벽블록'으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다(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형상과 모양을 대비하면 아래 표와 같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디자인의 유사 여부

가) 공통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을 대비하면, ① 석조물을 대신하여 축 조할 경우 상부블록과 하부블록을 수직으로 쌓으면서도 밑넓이가 적을 수 있도록 전체 적으로 직육면체 형상을 가진 점, ② 블록을 축조한 경우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정 면에는 자연미를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자연석이 층을 이루어 쌓은 모양이 불규칙하게 형성되어 있는 점, ③ 블록을 좌우로 상호 결합할 수 있도록 블록의 좌측면1) 중앙 부분에는 '돌기부'가 세로로 형성되어 있고 우측면 중앙 부분에는 '오목부'가 세로로 형성되어 있는 점, ④ 블록의 상부면 중앙 부분과 하부면 중앙 부분에는 배수로와 결합홈이 겸용된 '오목부'가 가로로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공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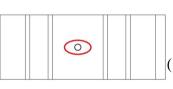
나) 차이점

그러나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성토지 또는 절개지 등에서 누출되는 물을

배수할 수 있도록



(정면도),



(배면도)'와

같이 블록의 정면 중앙부터 후면 중앙까지 수평 방향으로 관통하는 배수공이 형성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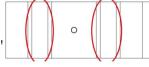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정면)'와 같이 배수공과 관련된 구

성이 없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블록과 토사 사이의 결합력을 증진함과 동시

에 재료비와 물류비를 절감하도록



(배면도),



(평면도)'와 같이 블록의 후면에 세로로 두 개의 '오목홈부'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

인대상디자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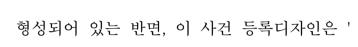
(배면)'와 같이 후면에 이러한 구성이 없는

점, 확인대상디자인은 줄을 연결시켜 블록을 쉽게 이동시키기 위하여

¹⁾ 정면도 기준으로 좌측면이다. 이하 '우측면', '상부면', '하부면', '후면'은 모두 정면도 기준으로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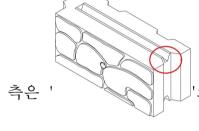


'와 같이 블록 상부면의 오목부 중앙에 견인 고리(anchor)가 한 개



'와 같이 이러한 고리

가 없는 점, ② 블록의 상부면 중앙 부분에 형성된 오목부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우



'와 같이 개통되어 있으나 좌측은 '

'와 같이

블록의 좌측면 중앙 부분에 형성된 돌기부와 연결되어 폐쇄된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와 같이 우측부터 좌측까지 전체적으로 개통되어 형성된 점, 🛈 블

록의 상ㆍ하부면 각 중앙 부분에 형성된 오목부 형상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우측면)'와 같이 상부면 오목부는 아래로 내려가면서 좁아지다 밑면은 평

평한 형상으로 알파벳 'V'자 모양이고 ' (우측면)'와 같이 하부면 오목부는 위로 올라가면서 좁아지다 윗면은 평평한 형상으로 알파벳 'V'자를 뒤집어 놓은 모양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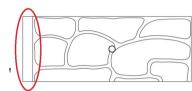
(우측면 상부),



(우측면

하부)'와 같이 오목부가 수직으로 형성되어 상부면 오목부는 알파벳 'U'자 모양, 하부면 오목부는 알파벳 'U'자를 뒤집어 놓은 모양인 점, ⑪ 정면에서 관찰할 경우 좌측면에

형성된 돌기부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와 같이 직사각형 모

양이나, 확인대상디자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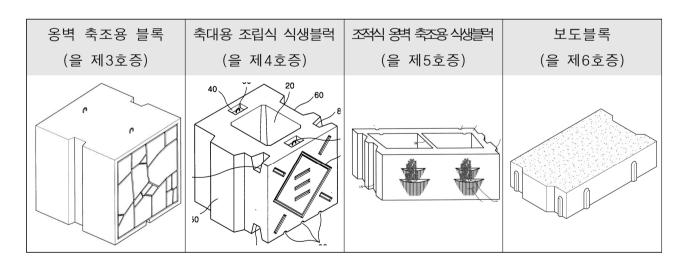
'와 같이 상부면과 하부면에 형성된 오목부

의 높이만큼 돌기부의 높이가 짧아져서 돌기부의 상·하 부분에 완만한 경사가 있는 모양인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다) 차이점에 대한 검토

앞서 든 증거, 을 제3에서 10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공통점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 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미감에 서 뚜렷한 차이를 느끼게 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 하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옹벽블록은 비탈의 흙이 무너지지 않 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건축자재로서, 블록과 블록 사이의 이음부에 모르 타르 등의 이음재를 사용하지 않고 수직으로 쌓을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직육면체의 형상이고(공통점 ①), 블록을 좌우로 상호 결합할 수 있도록 블록의 한 측면에는 '돌기부'를, 다른 측면에는 '오목부'를 각 형성한다(공통점 ③). 이들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이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이미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오랫동안 널리 사용되어 온 '옹벽블록'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에 해당하므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원고는, 보도블록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과 달라 좌·우측면에돌기부와 오목부가 형성된 보도블록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 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양측면에 형성된 돌기부와 오목부가 공지된 형상으로 볼수 없다고 주장하나, 옹벽블록과 보도블록은 용도와 기능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평 또는 수직 방향으로 결합하거나 쌓아 사용하는 건축자재라는 점이 공통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고려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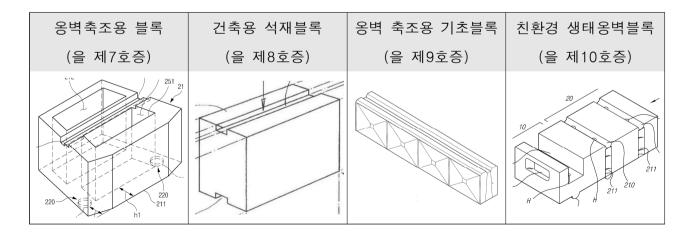
(2) 사용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 등을 고려하면, 옹벽블록 정면의 자연석 모양은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이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디 자인 출원 전부터 옹벽 등 콘크리트 벽면이 주변의 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입체적으 로 다양한 모양을 찍어 만들어 내는 문양거푸집이 판매되고 있었고, 선행디자인 1, 2에



'와 같이 자연석이 층을 이루어 쌓은 모양이 불규칙하게

형성되어 있어 양 디자인의 공통점 중 ②가 나타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연석을 층으로 쌓은 모양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이전에 이미 옹벽블록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실시해 온 것이어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 디자인 모두 옹벽블록의 정면에 해당하는 부분의형상과 모양에 중점을 두어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3)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블록의 상·하부면 중앙 부분에 배수로와 결합홈이 겸용된 '오목부'가 가로로 형성되어 있는 블록이 다수 있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공통점 ④는 공지의 형상과 모양이므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4)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형상과 모양 중 '블록의 후면에 세로로 형성된 두 개의 오목홈부'와 '블록의 상부면과 블록의 좌측면 중앙 부분에 형성된 돌기부가 연결 되어 블록의 상부면 오목부가 폐쇄된 형상'은 옹벽블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상이 아니고 수요자에게도 잘 보이는 부분이어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적 형태에 해당한다. 그런데 확인대상디자인은 후면에 오목홈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블록의 상부면 오목부는 우측부터 좌측까지 전체적으로 개통되어 있어 양 디자인은 현저한 차이가 있고,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에 위와 같은 차이가 있어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

(5)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거래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배수공 및 확인대상디자인의 견인 고리가 옹벽블록에서 외관상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을 거래할 때 이들 부분을 포함하면 전체적으로보아 두 디자인은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검토 결과 정리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임경옥

판사 윤재필

[별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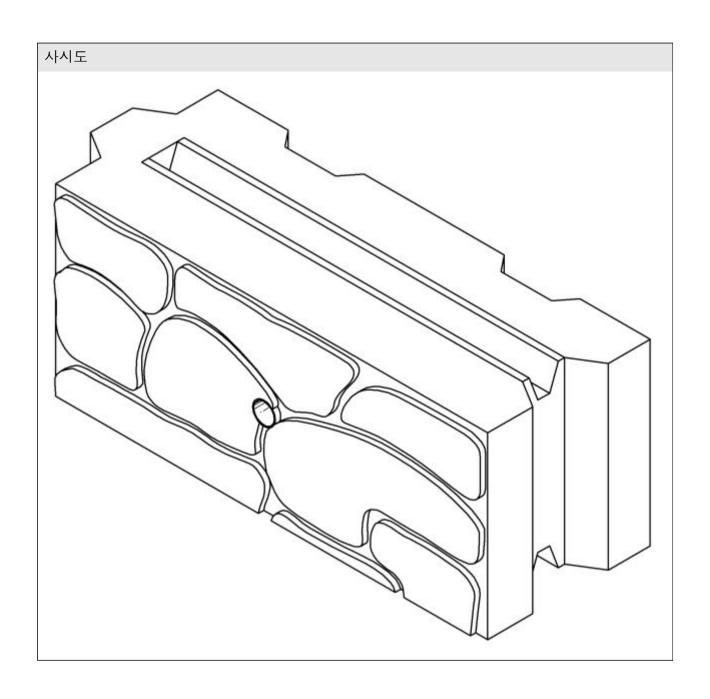
이 사건 등록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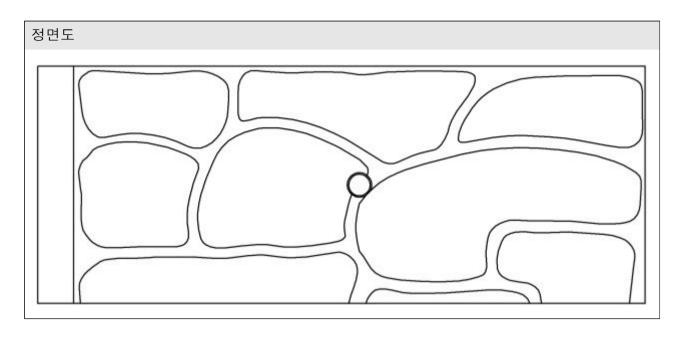
【디자인의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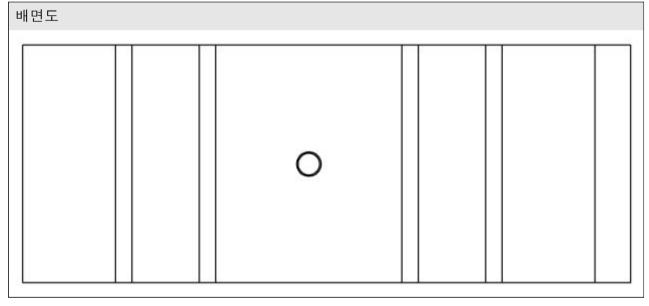
- 1. 재질은 콘크리트재, 바텀애쉬, 석재, 황토와 모르타르재를 사용한다.
- 2. 본 디자인은 담장, 옹벽 또는 제방 축조용 블록으로 사용한다
- 3. 블록과 블록 간의 이음부에 모르타르 등의 이음재를 사용하지 않고 직립으로 축조 가 가능하여 석조물 대용으로 축조시 바닥면적이 적다.
- 4. 블록의 상부면과 하부면에 배수로와 결합홈이 겸용된 오목부가 형성되고, 블록의 좌 측면에 돌기부가 형성되고 그 우측면에는 오목부를 두어 상호 결합하는 것이며, 블 록의 수평방향으로 배수공이 관통되어 성토지 또는 절개지 등에서 누출되는 물을 배수할 수 있다.
- 5. 배면의 일측에 다수개의 오목홈부를 형성하여 블록과 토사 간의 결합력을 증진함과 동시에 재료비와 물류비를 절감하도록 한 것이다.
- 6. 상/하부블록을 직립으로 적치하여 축조시, 블록에 작용하는 하중에 의하여 블록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블록의 상부면과 타블록의 하부면에 형성된 배수로 와 결합홈이 겸용된 오목부에 지지대를 설치하여 직립된 블록이 상호 견고하게 결합하도록 한다.
- 7. 블록의 정면에 자연석 무늬의 암석을 조합하여 층상으로 조립한 모양을 형성하여 아름다운 자연미를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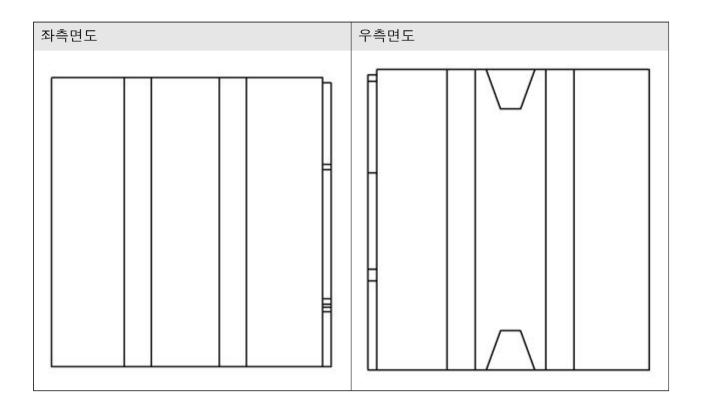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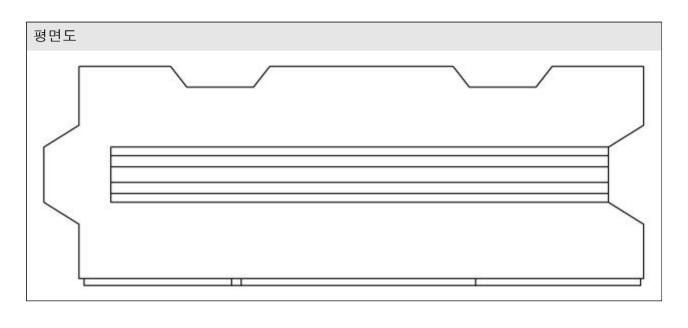
본 디자인은 "옹벽블록"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의 요점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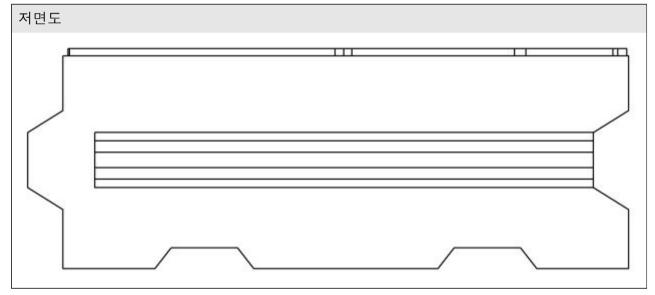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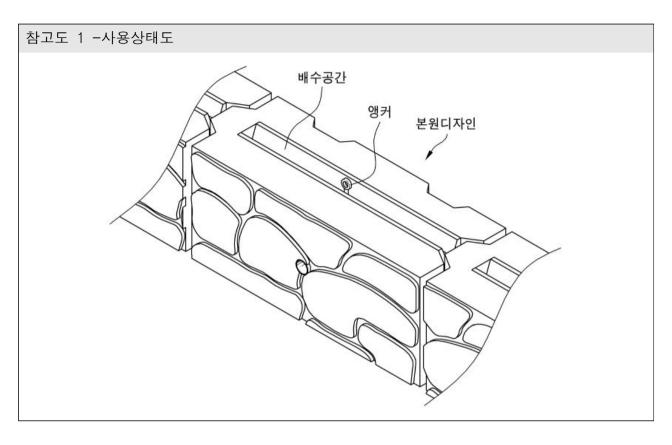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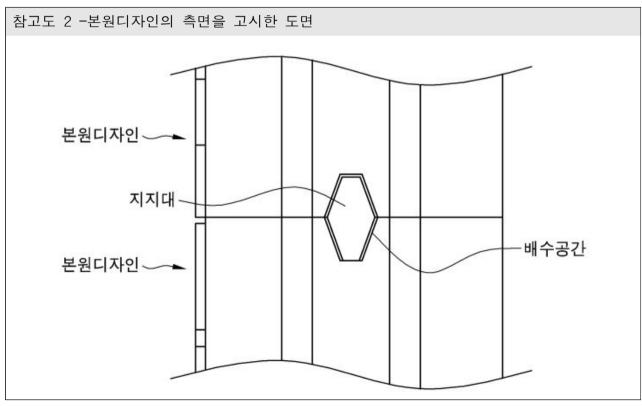












[별지 2]

확인대상디자인















[별지 3의 가]

선행디자인 1



[별지 3의 나]

선행디자인 2

